온라인 상담

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공통법령 및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에 답변해드립니다.
*기존 질의응답을 검색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제목	주관연구기관 변경
등록일	2015.12.08
질의내용	안녕하십니까? 연구단을 맡고 있는 주관연구기관(기업)이 경영악화로 인해 과제수행이 불가하여 협약변경을 통해 주관연구기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. * 사유 : 기업부담금 출자가 불가함. 연구인력의 구조조정이 필요함. - 타 참여연구기관(13개 기관)의 지속적인 연구수행 및 목표달성을 위해 - 원활한 지원이 가능한 연구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함. 이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및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첨부파일 : 협약변경_미래부.png
답변내용	**안녕하세요.** **문의주신 '주관연구기관 변경' 시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내용 변경시 지체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.** **그 밖의 관련 서류 및 절차 등은 전문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** **감사합니다.**

인쇄 창닫기